

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
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고시

2023. 12. 15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
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
어린이가 당류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 등 음료류의 당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음료류의 당 함량 강조 자율 표시 방법 신설([별표 1]제3호나목3))
-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·판매하는 음료류의 당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수 있도록 함

3. 기타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11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- (1) 행정예고(공고 제2023-426호, '23.8.25.)
- (2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(비대상, '23.6.26.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77호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「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3년 12월 15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
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호나목3) 및 4)를 각각 4) 및 5)로 하고, 같은 목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)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·판매하는 음료류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 중 당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글씨를 굵게(bold)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다

신·구조문대비표

부칙<제2023-77호, 2023. 12. 15.>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 1]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(제3조 관련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표시기준 및 방법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 1) ~ 6) (생 략)</p> <p>나. (생 략)</p> <p> 1) ~ 2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) 영업자가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등 온라인,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식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</p>	<p>[별표 1]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 1) ~ 6)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 1) ~ 2) (현행과 같음)</p> <p>3) <u>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·판매하는 음료류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 중 당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글씨를 굵게(bold)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4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릿,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
여야 한다. 다만, 홈페이지,
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만
주문받아 배달되는 식품에
대하여 홈페이지, 모바일앱
등 온라인으로 영양성분 정
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
략할 수 있다.

4) 영업자가 홈페이지, 모바일앱
등 온라인상에 조리·판매하
는 식품의 정보를 제공하는
경우에는 식품명이나 가격표
시 주변에 제2호가목의 영양
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5) -----

